

*Let's Security!*

# 세계 프라이버시 전문가들 한 자리에 Privacy Global Edge 2008

글로벌 기업 및 해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Privacy Global Edge 2008이 지난 4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CPO포럼이 주관한 것으로, 세계적인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지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이와 같은 행사에 정보보호뉴스 취재팀의 발길도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글·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제 막 활성화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해외 유명 기업과 기관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정책이 동일할 수도, 또 동일하지도 않겠지만 각 기업별, 국가별 정책과 활동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총 5개의 발표세션과 1시간의 패널토의로 구성됐으며 행사명에서 알 수 있듯, 발표자들은 모두 국내외 유명 기업 및 기관의 '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Jack Kwon(GE:General Electric)을 비롯해, Ken DeJarnette(Deloitte & Touche), Mary Carlson(Information & Privacy Commissioner BC, Canada), Geff Brown(Microsoft)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책임자가 해외에서 날아들었으며, 국내에서는 황보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 기업 프라이버시 정책, 최소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GE의 Privacy 책임자 Jack Kwon은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GE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는데, 철저한 기업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으로 유명한 GE인만큼 이날도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Jack Kwon이 소개한 GE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기대와 달리(?) 매우 간결하고 명료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The Spirit & The Letter'라고 불리는 GE 프라이버시 정책집을 통해 직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가 왜 중요한지, 이에 대한 GE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고객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와 책임자는 보다 세분화된 정책과 업무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말이죠.

각 기업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명료하고 간결해야 한다는 사실은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Deloitte & Touche의 Ken DeJarnette도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컨설팅 전문기업의 책임자답게 Ken DeJarnette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Risk, 즉 위험관리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기업 내 구성원이 모두 인지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보다 쉽고 간결하게 직원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Canada나 EU, 그리고 한국 등지에서 실시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에 대한 고지의무는 고무적인 형태라며 국제적으로 이런 고지의무는 지속되고 또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국내 분쟁조정 사례도 선보여

한편,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의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로 활약 중인 Mary Carlson은 'Winning the Privacy Wars'라는 재미있는 발표제목에서 알 수 있듯, 캐나다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개인정보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사고 발생 시, 행정부와 같은 정부기관에 신고하고 또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유사한 사고 발생 시 경찰청 등 사법기관이 출동하는 국내 환경과는 분명 차별화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캐나다 내에서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는 기업이라면 기업 프라이버시 책임자인 CPO(Chief Privacy Officer)들이 행정적인 관리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업 전반에 걸쳐 프라이버시 관리체계 수립 및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Microsoft를 대표해 온 Geff Brown은 Microsoft 내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전송되는지 그리고 Microsoft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및 클라이언트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Geff Brown은 이번 Privacy Global Edge 2008을 통해 여러 국가와 기업의 정보보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향후 제품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세미나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기도 하더군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중재기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황보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나섰습니다. 그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다뤄진 논쟁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유용하고 실용적인 견해를 제시해 참석자들은 물론, 다른 발표자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 정보 권리의 주체, 과연 누가 되어야 할까

이번에 치러진 Privacy Global Edge 2008은 향후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정책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는 자리였고, 또 그만큼 인상적인 논의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모든 발표자들이 동의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 혹은 데이터의 권리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각 기업이 소유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수집하고 보유한 정보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정보를 제공한 고객 개인에게 귀속돼 있어야 한다는 발표자들의 공통된 지적은 우리 모두가 한번 음미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에 대한 권리 주체의 문제. 언뜻 당연해 보이는 이 문구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환경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것이 Privacy Global Edge 2008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S